2023년 제1차 직원 (공개, 제한)경쟁채용 공고

"통영관광의 가치창출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일류 공기업!"

우리 통영관광개발 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합니다.

2023. 12. 1.

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

선발예정인원

(인원: 명)

방법	구분	직종	직급	직렬	직류	인원	담당직무
	신입 (청년의무고용)	일반직	8급	행정	일반행정	1	· 예·결산, 회계 등 사무업무
	신입	전문직	마급	├급 체육	수영강사	1	· 통영체육청소년센터수영장 수영강습 및 수상안전근무
공개경쟁	(경력)					1	· 산양수영장 수영강습 및 수상안전근무
					수상안전	2	· 통영체육청소년센터수영장 수상안전
	신입	무기	_	대고객	매표	1	· 통영체육청소년센터수영장 매표
		계약직		서비스	탑승안내 운영요원	4	· 케이블카 탑승안내 · 디피랑 운영요원
제 한 경 쟁 (보훈취업지원 대상자)	신입	무 기 계약직	-	대고객 서비스	탑승안내 운영요원	1	· 케이블카 탑승안내 · 디피랑 운영요원
계						11	

Ш

응시자격

1. 채용분야별 필수자격(①)과 공통자격(②) 모두 충족해야 함.

방법	구분	직종	직급	직렬	필수자격(①)	공통자격(②)
공개경쟁	신입	일반직	8급	행정 (일반행정)	령」 의거 청년에 해당하는자	·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경남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최 종임용일 까지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.

방법	구분	직종	직급	직렬	필수자격(①)	공통자격(②)
	신입 (경력)	전문직	마급	체육	· 수영종목 생활(전문)스포츠지 도사 2급 이상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 소지자	
				대고객서비스 (수상안전)	·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6. 수영장 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 소지자	[* 이 다. 세 한 따급.
	신입	무기계약직	-	대고객서비스 (매표)	·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자 · 새벽·야간근무 가능자	유)로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자
				대고객서비스 (탑승안내, 운영요원)	·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자 · 야간근무 가능자	· 나이(정년이하), 성별, 신체조 건, 용모, 학력, 전공, 종교 등 제한없음.
제한경쟁	신입	무기계약직	-	대고객서비스 (탑승안내, 운영요원)	·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· 야간근무 가능자	···
계						

2. 결격사유

- ▶ **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 - 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 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7의2. 재직기간 중 직무과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 - 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10. 채용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- 11.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 처분된 사람
- 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▶ 공사 인사규정 제30조(정년)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 - 1. 일반직 : 60세
 - 2. 전문직·무기계약직: 60세
 - 3. 체육전문직 : 47세
- ▶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조3(채용비위에 관한 통제)
- ② 비위로 채용된 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.

Ш

채용전형 및 반영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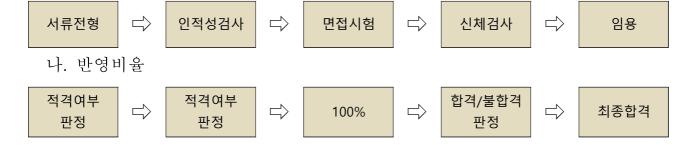
1. 일반직

가. 채용절차



2. 전문직, 무기계약직

가. 채용절차



전형별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

1. 서류전형

IV

가. 평가내용: 직무와 관련된 교육·훈련, 자격, 경험 등으로 구성.

나. 합격기준: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정.

2. 필기시험

필기시험은 외부 전문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집단에서 출제한 문제를 구입, 시험진행과 관련한 일체를 위탁하여 진행함.

가. 시험방법

- 1) 1교시: 직무능력시험
 - 3과목(전공, 영어, 상식), 80분(과목별 25문항, 4지선다형)
 - 시험과목

직종	직류	1과목	2과목	3과목
일반직	일반행정	경영학(경영학·회계학 혼합)	영어	상식

- 2) 2교시: 인적성검사
- 필기시험 당일 시차를 두고 병행 실시
- 45분간 265문항 마킹(신뢰성, 허구성, 인성점수 등 평가)
-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, 인적성검사지 구입 검수후 실시.
- 합격기준: 합격/불합격 여부만 판단.

나. 반영비율

구분	과목		배점	비율(%)	비고
	전공	1. 경영학	100	40	4지선다형
①차 직무능력시험	공통	2. 영 어	100	30	"
		3. 상 식	100	30	"
②차 인적성검사		인적성	적합/부적합	-	265문항

다. 합격기준

- 1) 인적성검사: 시험결과에 따라 적격/부적격으로만 판정.
- 2) 직무능력시험: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, 총점의 60%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총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아래표와 같이 하며, 동점자 발생시 그 인 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.
- 필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: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
- 필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: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
- 필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: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
- 필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: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

3. 면접시험

- 가.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
- 나. 면접은 다대다(면접관 다수 對 면접자 다수)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다대일(면접관 다수 對 면접자 1)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.

다. 평가항목

구분	업무적합도	태도·열정	일반상식	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예의·품행 및 성실성	계
점수	20	20	20	20	20	100

라. 합격기준: 면접점수 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처리

4. 합격자 결정

- 가. 각 전형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득점 기준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.
- 나. 결원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, 사유발생시 추가합격자로 임용.
- 다. 최종점수 합산결과,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는 취업보호(지원)대상사, 필기시험 고 득점자,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한다.

5. 신체검사

- 가.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실시.
- 나.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준용,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서 제출.
- 다. 부적합 판정시 합격자 결정 취소

6. 임 용

- 가.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후 정해진 기간내 임용예정자 등록.
- 나. 임용예정자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자 임용.
- 다. 임용 후 6개월 내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.
- 라. 임용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.

٧

시험일정

공고	원서접수	시험구분	장소공고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′23.12.01.	12.11.	서류전형	-	12.27.	12.28.
~	~	필기시험/인적성검사	12.28.	′24.01.09.	′24.01.15.
′23.12.22.	12.22.	면접시험	′24.01.15.	′24.01.18.	′24.01.19.

※ 상기 채용일정 관련한 시험장소, 합격자발표 등 관련사항은 통영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(www.ttdc.kr) '공사소식' → '채용정보' 란에 공고합니다.

۷I

보수 및 근무조건

1. 보 수

가. 공사 보수규정 및 동법 시행내규, 복리후생 등 관련규정에 따름

2. 근무조건

- 가. 주40시간,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, 시업시각은 사업장 특성에 따름.
- 나. 사업장 및 근무여견에 따라 휴일 및 연장, 야간근무 실시.
- 다. 기타 공사 취업규정 등에 따름.

3. 수습임용

- 가. 신규임용 직원 대상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
- 나. 수습평가 후 정규 근로계약 체결

4. 전직경력

- 가. 군경력 외 타사경력은 모두 인정하지 않음.(다만, 경력직 채용은 제외)
- 나. 전문직 체육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호봉산정기준으로 인정함.



가산특전

1.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그룹	대상자	가산비율	비고
가	취업지원대상자 ^①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
나	특수자격취득자 ^②	과목별 만점의 10%	가산특전 세부내용은
다	북한이탈주민 ③	과목별 만점의 3%	하단 '가산특전 관련
<u>-</u>	장애인 ④	과목별 만점의 3%	유의사항 ' 참고.
라	직무자격취득자 ^⑤	과목별 만점의 1%~2%	

※ 주석 ① 취업지원대상자: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등에 따른 대상자

10%	5%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	1. 왼쪽칸 1번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
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	2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
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	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특별공로자	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
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	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	
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	

10%	5%
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	

- ② 특수자격취득자: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기술사, 건축사 자격
- ③ 북한이탈주민: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자
- ④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⑤ 직무자격취득자: 해당분야별 국가공인자격별로 차등반영

2%	1%
컴퓨터활용능력1급	컴퓨터활용능력2,3급, 워드프로세서

2.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

- 가. 가점은 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.
- 나. '가'~'라' 그룹의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며, 그룹내 중복적용 안됨.
- 다.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.
- 라.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 간 공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
- 마. 가산특전대상자는 향후 공고에서 안내하는 기간내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 서, 자격증 사본 등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.

VIII

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1. 접수방법

- 가. 우편접수: 경남 통영시 발개로 205(도남동), 통영케이블카 탑승장 2층
 - 통영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앞
- 나. 방문접수: 공사 방문하여 직접 제출, 접수 확인
- **2. 접수마감:**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
3. 제출서류

- 가. 입사지원서 1부.
- 나. 자기소개서 1부.
- 다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
4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행사항

<거짓채용광고 금지>

우리 공사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

<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>

우리 공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 드립니다.

<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>

구직자는 공사에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.

<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>

우리 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.

<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>

우리 공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드립니다.

<채용여부의 고지>

우리 공사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 드립니다.

<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>

우리 공사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.

<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>

우리 공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.

<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>

우리 공사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 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반환합니다.

IX

유의사항

- 1. 응시원서를 통해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, 응시자의 실수, 착각으로 인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2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,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3. 채용예정 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- 4.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5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- 6.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이내에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.(단, 최종합격 자는 제외)
- 7. 공개경쟁시험 최종임용자에 대해서는 신입직원으로서 병역사항 외 타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(다만, 경력직 채용은 제외, 체육전문직 최대 5년까지 인정)
- 8. 우리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므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시 응시자 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, 나이, 병역, 결혼여부 등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9.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경영지원팀(649-3802)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응시원서 작성요령 1부.
 - 2.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1부.
 - 3. 자기소개서 1부.
 - 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 끝.